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015. 5. 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2014.12.8.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주민만족과 대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마포구 정원을 “1,301명”에서 “1,3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정원 5명을 증원함. (안 제2조)

#### 《 마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계획(행정자치부) 》 (단위 : 명)

구분	2015~2017년 총 확충규모				2015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총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인력구조 개선	15년 소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행정직 재배치	자연결원 대체
서울시	658	393	135	130	220	175	23	11	11
마포구	14	8	3	3	5	4	1	-	-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 (안 별표 3)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1	1,305	4
정무직	1	1	0
일반직 계	1,294	1,298	4
3급	1	1	0
4급	7	7	0
5급	58	58	0
6급 이하	1,227	1,231	4
전문경력관	1	1	0
별정직 계	5	5	0
5급 상당	2	2	0
6급 상당 이하	3	3	0
연구직	1	1	0

※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15.3.30.자) 6급 1명 삭제, 순증인력 6급 이하 5명 증가

##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계획」에 따라 2013.11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보강지침」 및 2014.12.8.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동(洞)주민센터로 찾아오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원상담 중심의 수동형 복지서비스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직접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필요한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늘려서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마포구 정원을 “1,301명”에서 “1,3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증원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1	1,305	4
집행기관	1,272	1,276	4
구의회사무국	29	29	0

안 별표 3에서는 총 계란, 일반직 계란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05	1,305			
일반직 계	1,298	1,298			
6급 이하	1,231	1,231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12.8.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늘려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 등 단계적 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2015년~2017년 연차별

확충 사회복지인력 정원을 5명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 상 정원 1,301명 중 1명이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2015.3.30)으로 자동 감소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원을 1,300명으로 감소하여야 하나 이를 감소시키지 않고 본 조례 개정 시 마포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을 4명만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총 정원은 5명(사회복지직 4명, 행정직 1명)이 증가한 것임.

- 사회복지인력 확충인력에 대한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직 4명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현장을 찾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직 1명은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 접수, 복지서비스 대상 조사 및 증명서 발급 등 복지행정 업무를 맡게 되며, 2015년도 마포구 기준인건비는 1,067억 1,878만원으로,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부담액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 구는 연간 1억 857만원으로 자치구 부담률 25%를 적용하면 약 2,715만원이 증가하게 되나, 우리 구는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104명의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휴직자에게는 봉급 수당이 미지급하게 되어 있어 이번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同) 조례는 2015.4.2.~ 4.1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마포구 관내 현장중심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복지인력 증원으로 증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4.5.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1호, 2014.5.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0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1. 집행기관의 정원: 1,272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부칙 <제971호, 2014.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3명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식품안전추진반장 5급 1명은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9명은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증원되는 일반직 40명 중 29명은 기능직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총원한다.

부칙(2011.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54호, 2012. 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874호, 2012.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3호,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2호, 201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전행정국(총무과)의 사무명 제1호가목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한다.

부칙(조례 제952호, 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4.1.부터 2016.12.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71호, 201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6급 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 참고 자료

##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 □ 우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배정인력 : 5명

- 복지직 4명, 행정직 1명
  - 직렬별 전문성 활용 및 직렬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직과 행정직으로 총원

### □ 확충인력 담당 예정업무

- 복지직 : 현장 방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민원 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적 복지 업무
- 행정직 :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 접수, 대상 조사, 증명서 발급 등 복지행정 관련업무

### □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항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보건복지부)
  - 연도별 순증 규모에 따라 각 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 기준인력 별도 산정 및 사후정산제 실시
  - 순증분에 대해 '15년 ~ '17년 간 한시로 기준인력 별도 산정(일반직/소방직  
→ 복지직 순증분/복지기능행정직 순증분/일반직/소방직)
  - 당해 연도 순증 실적이 미흡할 경우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120% 회수

#### ※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방식

- 순증인력(정원증원) : 국·시·구비 50:25:25 매칭
  - '12 ~ '14.3월 신규채용 인력
- 개별급여 인력 : 국·시·구비 50:25:25 매칭
  - '14.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한 순증인력
- 기존인력 : 시·구비 50:50
  - 위 대상 외 기존 사회복지직 인력

#### ※ 우리구 정/현원 현황

정원 : 1,300 / 현원 : 1,392 / 별도정원 : 104 / 실현원(현원-별도정원) : 1,288  
- 별도정원 사유 : 공로연수 19명, 육아휴직 70명, 출산휴가 6명, 파견근무 3명,  
배우자 동반휴직 3명, 질병휴직 2명, 간병휴직 1명

□ 2015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현황

구 분		예산액(천원)	구성비
2015 기준인건비		106,718,780	
합 계		99,335,397	100%
101 인건비		79,684,114	80.2%
	101-01 보수	66,085,321	66.5%
	101-02 기타직 보수	2,991,201	3.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607,592	10.7%
204 직무수행경비		2,217,600	2.2%
	204-02 직급보조비	2,217,600	2.2%
303 포상금		3,668,514	3.7%
	303-02 성과보상금	3,668,514	3.7%
304 연금부담금등		13,765,169	13.9%
	304-01 연금부담금	11,435,980	11.5%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329,189	2.3%

□ 순증인력 인건비 소요액 : 금135,710천원 (1인당 연간소요액×5명)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연간소요	월회별			
계	27,142,190				
기본급	15,393,600	1,282,800	9급1호봉	매월지급	
정근수당	-	-	1년미만 미지급		
가족수당	240,000	20,000	배우자 40,000, 기타부양 20,000		
특수업무수당	사회업무수당	1,200,000	100,000		수당 70,000+자격가산 30,000
	동근무수당	840,000	70,000		
시간외근무수당	5,217,840	434,820	9급단가 7,247원 60시간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			
직급보조비	1,260,000	105,000			
명절휴가비	1,026,240	513,120	월봉급액×60%		연2회
연가보상비	404,510	404,510	월봉급액×86%×1/30×11일		연1회
성과보상금	-	-	1년미만 미지급	연1회	

□ 순증인력(5명)지원액<사회복지직4명+행정직1명> : 금 54,286천원

○ 사회복지직(4명) : 27,142,190원(1인당)×4명=108,569천원×25%=27,143천원

○ 행정직(1명) : 27,142,190원(1인당)×1명=27,143천원

□ 마포구 사회복지직 직원 현황

연번	부서(동)	전 직렬				사 회 복지직 (현 원)	비고
		정 원	현 원	별도정원	실현원		
	계	379	411	34	377	99	사회복지 12명 별도정원
1	복지행정과	23	22		22	11	
2	생활보장과	31	35	4	31	24	사회복지 3명 별도정원
3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2	23	1	22	7	
4	가정복지과	27	31	4	27	8	
5	공덕동	20	23	3	20	4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
6	아현동	20	21	1	20	5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
7	도화동	16	17	1	16	2	
8	용강동	16	19	3	16	2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
9	대흥동	16	15		15	2	
10	염리동	16	17	1	16	3	
11	신수동	16	18	2	16	2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
12	서강동	17	20	3	17	2	
13	서교동	20	22	2	20	2	
14	합정동	16	18	1	17	3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
15	망원1동	16	20	4	16	5	사회복지 3명 별도정원
16	망원2동	16	16		16	2	
17	연남동	16	16		16	2	
18	성산1동	16	16		16	2	
19	성산2동	21	23	2	21	7	
20	상암동	18	19	2	17	4	사회복지 1명 별도정원